

- 불필요한 행정규제 없는 시민을 위한 사규운영 -

사규내 불합리한 유사행정규제 일괄정비추진(안)

2016. 6.

기 획 조 정 실
(법무처)

- 불필요한 행정규제 없는 시민을 위한 사규운영 -

사규내 불합리한 유사행정규제 일괄정비추진(안)

시민에게 필요이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사규 내 숨은 유사행정규제 조항을 자발적으로 발굴 및 개정하여 합리적인 업무추진과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

1 추진경과

- 서울시 공기업담당관-2254호(16.3.3.) 『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정관 및 각종 내규 제출요청』
 - ⇒ 공사 운영사규(정관 등 총 155개)제출 및 클린아이 게시완료
- 서울시 공기업담당관-2957호(16.3.22.) 『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 협조요청』
 - ⇒ 계약규정 등 5개 사규 6건 자체 발굴 제출
- 서울시 공기업담당관-3138호(16.3.25.) 『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현장발굴계획』
 - ⇒ 현장토론회 참석(16.3.28., 경기도의회 회의장)
- 서울시 공기업담당관-3984호(16.4.12.) 『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2차 현장발굴 계획』
 - ⇒ 현장발굴 참여(16.4.14., SH공사 회의실)
 - ⇒ 2건 추가 발굴로 총 6개 사규 8건 자체 발굴 제출
- 서울시 공기업담당관-6643호(16.6.16.) 『지방공사·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 대상 확정 및 정비지침 배포』
 - ⇒ 정비대상 확정(4개 사규 5건)

2 추진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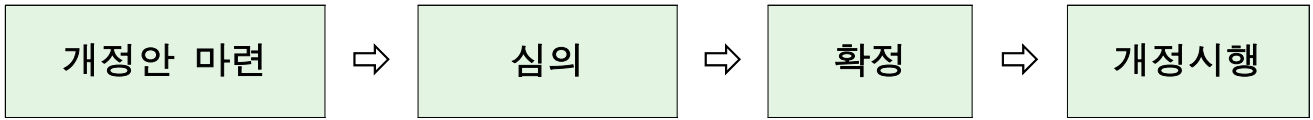
- 행정자치부 추진정책에 부합하는 **자발적이고 실질적인 개정** 추진
- 개정안 사전예고를 통한 **시민의견 수렴** 및 적극 반영 추진
- **법무처 일괄 개정**으로 사규운용부서의 행정업무경감 및 신속한 정비 추진

3 추진계획

- 추진대상 : 총 4개 사규 5개 조문

연번	사 규 명	해당조문	불합리유형	비고
1	소송사무 처리규정	제43조(해석의 협의 결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해석상의 의문이 있는 사항은 공사와 소송대리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의 해석에 의한다.	불공정계약	
2	물품보관전달함 이용약관	제7조(이용의 거절) ③그 외 공사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	주민생활불편	
3	재산관리규정	제26조(임대조건) 5. 그 밖에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사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사장이 인정할 때	기타	
4	재산관리규정	제28조(매각조건) 6. 그 밖에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사에 유리하다고 사장이 인정할 때	기타	
5	주차장관리 운영내규	제15조(주차거부) 4.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이 주차하고자 할	주민생활불편	

○ 추진절차



(1) 개정안 마련

- 개정안에 대해 사규운용부서 의견 수렴
- 법무처 조정 후 개정안 확정

(2) 심의

-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생략 추진
 - ※ 사규관리규정 제12조제3항 : 정부방침에 의한 개정시 심의생략
- 개정안 공사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에 사전예고 실시 : 시민의견 수렴반영

(3) 확정(사규관리규정 제13조)

- 법무처 일괄 확정절차(사장결재) 추진
 - ※ 이사회부의대상 「재산관리규정」 개정사항은 사후 보고 추진

(4) 개정사규 시행

- 개정사항에 대해 서울시(행자부) 보고 추진 (~16.8.26.까지)

4 기대효과

- 시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사규 내 불합리 규제조항 개정으로 시민의 권리보장 및 합리적인 업무추진 기준 마련
- 법무처 일괄 개정 추진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증대
- 17년 행자부 경영평가 지표 신설(유사행정규제 정비실적 : 가중치 0.5점) 대비 실적관리 철저

붙임 : 정비대상 현황(행자부 확정과제) 1부. 끝.